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 문 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·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관련 규제 재검토 주기 완화(안 제56조의23제1항)

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·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18. ~ 4. 2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3제1항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, “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을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의23(규제의 재검토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</u> 을 기준으로 <u>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</u>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56조의23(규제의 재검토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5년 1월 1일</u> ----- <u>3년마다(매 3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73